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노무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과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야 하지는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소위 '오야지')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며,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작업진행계획을 수립하여 독립된 판단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자재와 경비를 부담하여, 공사대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수급인이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등의 경우라면 당해 수급인을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 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또는 공사)을 진행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당해 수급인(오야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031-877-7882-3)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는 어떤 제도인지요?

A 생명유지장치 사용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는 고객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매월 해당 가구의 주택용전력 요금계산시 301~600kWh 구간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누진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은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각 누진직용 단계별로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월 400kWh 사용 고객은 약 9천원, 500kWh 사용 고객은 약 2만2천원, 600kWh 사용 고객은 약 5만4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

A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전 창구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539-0232)로 접수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539-0222)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한전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소정 양식의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가정산소치료의 경우는 산소치료처방전과 표준계약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는 의사진단서(소견서)와 세균계산서(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금 적용은 제도 홍보기간인 금년 10.31 이전에 신청한 고객은 금년 8월분 요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해 드리며, 홍보기간 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해 드립니다.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조기관절염과장 **민도식**



Q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

A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연골이 마모되고 이차적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충격 흡수(완화작용)하는 연골이 소실되면 뼈의 표면이 관절면과 직접 닿게 되고 관절표면의 탄력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팔다리를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다.

하를 많이 받게 되는 관절(무릎관절, 고관절, 척추관절)과 손가락 관절이다.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을 살펴 보는 것이 질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 마디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내에 염증이 존재하므로 아침부터 통증이 발생하는 반면 골관절염은 관절을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기에 주로 저녁 무렵에 증상을 호소한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달리 전신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치료로는 크게 약물치료(경구 약물, 크림, 패치제, 주사요법)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누어진다. 이중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심한 급성기 통증의 경우에는 경감될 무렵까지 운동을 당분간 쉬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리가 같은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 이후에는 규칙적인 운동(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으로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집 안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무릎관절주위 근육강화운동(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운동,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굽혔다 펴는 운동) 또한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끊임없이 하중이 가해져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기본 출발점을 강조하고 싶다. 구체적인 목표(한 달에 몇kg 감량, 운동은 30분 이상 등)를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관절 변형이 심하여 일상생활(보행, 정거타질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인공관절 치환술, 연골 이식수술 등)를 생각해야 한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031-539-9150)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Q 저는 어제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시,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

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4조).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제4조에서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

그리고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실물이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할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도 횡선수표에 있어서는 수표를 유실한 후 그것이 선의·무과실인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가 입게 될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에 따라 보상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2.10. 64대1488).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가정폭력 특별법이 무엇인가요?

A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력 및 노인학대도 가

정폭력에 포함된다.

▶경찰의 응급조치란?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법원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원은 가해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일반 급여자와 구분이 무엇인지, 지급조서의 제출은 언제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액 - 8만원)×8%×45%×일수”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의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직(건설직)일용근로자로서 3월(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

말정산시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 고용주에게 3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급여자가 되며, 또한 근로제공 대가를 월정액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반급여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일인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월 평균 며칠 이상을 근무하여야만 계속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계속고용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대표 안 병 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기술자문 및 대관업무 상담

REAL TV -

『TV 속 세상』 2007년 5월 22일(화) 방영업체



▶변압기 부하 측정



▶발전기 엔진오일 점검